

"우리 국토 아름답게 - 우리 교통 편리하게"



건설교통부

서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

귀 협회 건협산업제도1031-52호('05.6.15)의 관련입니다.

[질의요지]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중 "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"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사(건설재료시험기사, 철도보선기사, 토목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)를 의미하는 것인지 토목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

[회신내용]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는 토목분야의 다른 기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분야중 토목기사만을 의미합니다. 끝.

"우리 국토 아름답게 - 우리 교통 편리하게"



건설교통부

서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

귀 협회 건협산업제도1031-52호('05.6.15)의 관련입니다.

[질의요지]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중 "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"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사(건설재료시험기사, 철도보선기사, 토목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)를 의미하는 것인지 토목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

[회신내용]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는 토목분야의 다른 기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분야중 토목기사만을 의미합니다. 끝.